

고령화에 따른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의 건축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Medium and Small Scale Elderly Care Facilities

김 흥 기* 김 용 기**
Kim, Heung-Gee Kim, Yong-Gee

Abstract

Recently the concerns of aging & care according to the aged Society were on the increase about Home for the elderly facility. In order to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lanning directio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medium and small scale Elderly Care Facilities. This survey are used to investigate with latest building data, which is Long-term Care Insurance Code for the Elderly was started on July 2008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type of hom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group homes are spread out, attached to day care center type, nursing home type, city region type, countryside rural type, near the university and remodeling type. Secondly, per capita room area-6.32m² are sufficient in regal comparison with 6.6m². Thirdly, Sunlight environments is inappropriate condition as south direction proportion-41.95%. According to the present situation various facility type and model for our baby boomers generation should be more developed with preemptive systems of senior welfare concept.

키워드 :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축환경, 일조환경

Keywords : Elderly Care Facilities, The Elderly Group Homes, Architectural Environments, Daylight Shading Environments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배우자 및 가족의 돌봄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바, 국가와 사회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네트워크 체제’가 마련되어 이제 도입 단계를 지나 정착기 초입에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노인요양을 위한 각종 물리적 시설, 제도 운용, 재정 집행 등에 문제 발생 사례가 적지 않다.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림 1과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63년생, 전인구 중 14.58%)가 65세 노인이 되는 5년 후 시점부터 전세대의 노인세대(1946년 이전 출생, 11.74%) 장수인구가 보태지고 후세대 2차 베이비부머

(1968-1974, 12.57%)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인인구로 진입되면서 2025년 19.9%, 2060년 40.1%로 증가되어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로서 선제적 노인복지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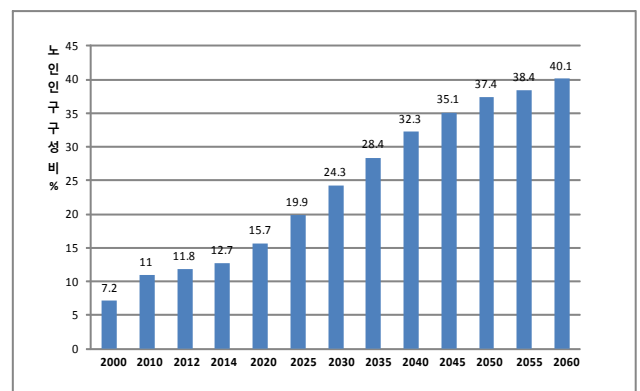


Figure 1. Estimates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노인인구의 급증은 장차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며, 노인친화 국가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

*정희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건축사, 예담건축사사무소 대표
**정희원, 홍익대 박사수료, 기린건축사사무소 대표(교신저자)
(kirinhy@hanmail.net)

2)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www.activebb.kr

면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시대적 요구에 조용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5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의 신축 운영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과 같은 노년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인주거시설의 기능성과 환경성의 비중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한 가정에 치매나 중풍 환자가 발생될 경우 부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어 평범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정 해체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家庭)이 아닌 사회(社會)와 국가(國家)가 함께 부양하게 되는 시설로서 시설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인요양원에 대한 건축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노인요양원 용어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분류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 시설군을 아울러 지칭하며, 건축법상 용도구분은 노유자시설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것과 일치하여 사용됨을 밝혀둔다.

급변 연구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규모 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건축설계 및 시공 전문가를 물론 시설을 추진 중인 개인, 법인,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 입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양원 시설은 사용 중 리모델링 여건이 타 시설 보다 매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바, 중소규모 요양원 추진시 운영 프로그램의 상호 비교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노인복지의 국가적 사회적 지원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한다. 즉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자칫 시설환경이 열악하게 되거나 미비하게 되는 중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각 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수집하여 실별 종류와 면적을 조사하고, 일조환경 분석은 sketch-up pro를 사용하여 동지일 기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일조 음영을 분석한다. 연구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법규 검토 및 도면 수집이 진행되었고,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답사에 의해 현장 실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복지, 정책 등 각 분야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가 괄목하였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이 시설의 공간분석에 의한 계획기준의 제시 부문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및 연계 방안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연구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건립된 중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건립된 중소규모 요양시설 사례를 대상으로 실내 건축환경의 분석을 통해 향후 건축계획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advanced Research

| 영역 | 논 제 | 내 용 | 연구자 |
|------------------------|---|--|----------------------|
| 건축공간분석 및 계획기준부 | 노인요양시설의 이용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전북도내 16개 노인요양시설의 조사를 통하여 공간구성 및 최소 1인당 면적을 제한하고 건축계획 방향 제시 | 추연철 이동숙 윤종영 2010 |
| | 소도시 노인요양시설 요양노인의 생활행위와 공간이용 사례 연구 | 요양시설 입소한 치매노인의 생활 행위와 공간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배화공간, 담화코너, 공동작업장 설치를 제안 | 양금석 2010 |
| |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인의 공간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 장성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치매노인 대상 공간이용패턴 분석 후 건축계획기준 제시 | 양금석 2006 |
| |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2008년 노인요양보험 시행 이전 시설 10곳을 조사하여 유형과 각실 공간을 분석 | 이완건 2010 |
| | 실태분석을 반영한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욕실 및 화장실의 공간계획 연구 | 노인요양시설의 욕실과 화장실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공간 분석 및 실내공간의 계획 기준 제시 | 김대년 정미림 윤영선 변혜영 2008 |
| |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 거주단위유형을 선형, 회랑형, 그룹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편복도형, 중복도형, 확대복도형으로 분석 제시 | 최지혜 함옥 이낙운 2004 |
| 시설간의 복합화 및 기타 |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및 Web GIS 분석에 의한 농촌지역 요양시설과 보건소병원의 접근성 |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소 및 병원의 이동거리를 분석하여 보건소 기능확대 및 IT 탑재 구축차량 확충을 제시 | 남윤철 박경옥 2010 |
| | 시설간 연계를 고려한 농촌지역 노인복합시설의 계획 | 국내 노인복지종합타운(1996) 중평/서천/김제/조정과 일본 4개 시설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복합화 방안 제시 | 남윤철 박경옥 2010 |
| | 노인시설의 지역연계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노인요양시설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설화, 소그룹화, 소형화, | 정소강 2010 |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원 건축환경

2.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및 법적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년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대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표 2 참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입소노인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명 이상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위 2개 시설에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1, 2, 3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Elderly welfare facility

| 분류 | 세부분류 | 특성 | 비고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
| | 노인복지주택 | 60세 이상 30세대 이상 |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 장기요양 1, 2, 3등급자로 사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연구 대상으로 입소하는 시설을 분석함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 | |
| | 경로당 | |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여가활동자, 장애인 등 | 노인 케어 센터 |
| | 주야간보호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로부터 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이동 서비스 |
| |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일상생활을 제공함 |
| | 그 밖의 서비스 | 수행하기 어려운 서비스 | 노인복지 프로그램 |
|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 |
|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 |

자료: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5, 2014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6년 815개소에서 2008년 1,332개소로 60%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2,610개소로 정점을 보인 후 2013년에는 2,497개소로 감소되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생각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8년 첫해에 422개소가 인가 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1,742개소로 240% 이상 증가 후 2013년에는 2,088개소로 대폭 증가일로에 있어 부실한 환경 및 열악한 운영에 처해 있는 요양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표 3 참조).

Table 3. Increase of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y

| 구분 | 노인요양시설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시설수 Facilities | 정원 Strength | 현원 Inmates | 시설수 Facilities | 정원 Strength | 현원 Inmates |
| 2002 | 120 | 10,032 | 8,630 | - | - | - |
| 2004 | 357 | 22,882 | 18,070 | - | - | - |
| 2006 | 815 | 40,589 | 32,314 | - | - | - |
| 2008 | 1,332 | 66,715 | 56,736 | 422 | 3,500 | 2,595 |
| 2009 | 1,642(14) | 82,271(2,419) | 65,476(1,118) | 1,009(10) | 8,504(90) | 5,893(26) |
| 2010 | 2,429(18) | 107,506(1,800) | 85,538(908) | 1,346(2) | 11,361(18) | 8,572 |
| 2011 | 2,489(15) | 111,457(1,476) | 92,570(792) | 1,590(5) | 13,848(44) | 11,403 |
| 2012 | 2,610(12) | 118,631(1,573) | 99,824(1,037) | 1,742(6) | 14,998(27) | 12,826(15) |
| 2013 | 2,497 | 121,774 | 102,747 | 2,088 | 18,165 | 15,966 |

자료:보건복지부*()안 숫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미지정시설 수

노인요양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노화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는 일상생활능력(Ability of daily life)이 현저히 떨어져 가족과 생활하기 힘든 경우의 노인이 입소하여 요양보호사 및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 개념’이 아닌 자신의 집과 유사한 ‘가정 입주의 개념’으로 제공되어야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의 필요시설은 거주공간, 간호공간, 관리공간, 공용공간의 4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건축 제실로 구분하면 표 4와 같이 총 12개 부분으로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10명 이상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실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및 오락기구를 갖추어 거실 개념과 유사한 실이다.

Table 4. Necessary of facility and rooms

| 시설별 |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사실 | 의료및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래밍실 | 식당및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및목욕실 | 세탁장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소자 30명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5명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13. 12. 0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기준, 구조설비기준, 시설별설비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Table 5. Criteria of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y

| 구분 | 시설기준 | 적용 |
|--|--|-----------------|
| 시설규모기준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 시설 |
|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시설조설비기준 |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보건위생 재해방지 |
| |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 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무장애설계 |
| 시설별설비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 |
| |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절한 문화·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추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
| 시설별설비기준 |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 침실설비기준 |
|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 |
|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 |
|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욕조 |
|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 면적을 장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고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 |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길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 | |
|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 |
|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 잠금장치 |
|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사로 엘리베이터 |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014. 8. 6 개정
주) 욕외공간의 정원(욕상정원 포함), 산책 공간, 그늘집 등 규정 미비

2.2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의 조사 분석

조사 대상 노인요양원은 소규모의 5인 정원부터 중규모의 28인까지 분포하였고, 건립 시기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까지로 신축과 증개축 등 다양한 건축형식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다(표 6 참조).

A 요양원은 도시 외곽 관리지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노인복지의 추가적 필요에 의해 최소 규모 노인요양원으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동일 대지 내에 증축하여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2층 규모에 5인 입소정원으로 추진된 법정 최소 규모이다.

B 요양원은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2013년 건립되었는데 이 또한 별도 신축에 의한 기존 시설 증축에 해당된다. 시설장의 단독주택이 동일 대지 내에 있는 전형적인 가정운영 방식으로서 농촌마을과 근린 소통이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유형이다.

C 요양원은 구도심 시가지의 골목길이 살아 있는 마을에서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형태로써 준주거지역에 입지하여 2010년 건립되었다. 14인 입소정원의 중규모로서 노인요양시설 설립 규정에 따라 신축되었는데, 도심에서도 노인요양원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형적 운영 사례이다.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양원 건립에 의한 의료기관, NGO, NPO, 봉사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되는 유형이다.

D 요양원은 산촌의 전원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 건립된 형태로서 기존 농산촌 마을과 이격되어 나홀로 입지 시설이다. 산과 계곡이 수려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전원형으로서 수도권 노인의 선호도가 높은 20인의 중규모이다. 가족 방문 시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숙식이 가능한 게스트 룸을 갖추고 있어 타시설과 차별성을 지닌다.

E 요양원은 대학 역세권내 다가구주택 원룸촌에 입지한 형태로 원룸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한 사례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입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중 지하1층과 1층, 4층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과 자연스런 접촉 기회가 자주 있고, 자원봉사 서비스도 수월하게 접근될 수 있어 입소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타시설 보다 높다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시설이다.

Table 6. Classification of Research about Home for the Elderly





| 시설 | 개요 | 지역 | 규모(층/인) | 건축형식 | 건립 |
|----|--------------------------------------|-----------|---------------|------------|------|
| A |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병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도시근교 입지 | 관리 | 2층-5인 | 증축 별동신축 | 2008 |
| B | 단독주택이 있는 소규모 가정요양원 형태로 농촌 마을 정주지에 입지 | 계획관리 | 1층-9인 | 증축 별동신축 | 2013 |
| C | 구도심 시가지에 입지 | 준주거 | 2층-14인 | 신축 | 2010 |
| D | 산촌전원지역에 외따로 떨어져 나홀로 입지 | 계획관리 | 2층-20인 | 신축 | 2013 |
| E | 대학과 인접하여 입지 (원룸과 병행 운영) | 일반주거 (2종) | 4층-28인 (지하1층) | 증축 용도변경 | 2011 |

2.2.1 A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동일 대지에서 병립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시설로서 1층은 2인 침실 1개소와 3인 침실 1개로 총 5인의 법정 최소 규모로 화장실은 두 침실 사이에 위치하고 세면장 및 샤워실이 주방 측면에 배치되었다. 주요 생활 및 각종 활동은 오락실을 마치 가정집의 거실 기능처럼 남향으로 요양원 중심에 배치하여 가족단위 스케일로 구성되었다. 보일러실은 상대적으로 크나 수납공간은 부족하다. 2층은 휴게실을 중심에 두고 남측에 세탁건조실을 배치하고 서측으로 옥상 다목적 공간을 할당하였다. 기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을 구성하고 창고를 북측에 지원하였다. 피난계단은 실내 1개소와 옥상 테라스를 통한 옥외 피난계단 1개소로 총 2개소를 확보하였다.

1인당실면적은 2인실이 5.76m²/인, 3인실이 5.33m²/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² 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침실창면적은 법정 시설기준으로 바닥면적의 1/7(14.3%)이상 확보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인실은 19.53%, 3인실은 14.07%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조환경은 2인실과 3인실 모두 북측에 배치하고 남측에 오락실과 주방을 두어 침실 일조는 동향 및 서향의 일조로 건축되었다.³⁾

Table 7.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A-Facility

| 층 | 도면 | 설명 |
|-----------|---|---|
| 1 |  | 2인실 1개 3인실 1개 현관 오락실 주방 세면장 및 샤워실 화장실 현관전실 보일러실 피난계단2 |
| | 침실수 | 2개실: 2인실 1개, 3인실 1개 |
| | 침실면적 | 2인실: 11.52m ² 3인실: 15.99m ² |
| | 1인당실면적 | 2인실: 5.76m ² /인 3인실: 5.33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2인실: 19.53% 3인실: 14.07% |
| | 남향침실비 | 0%(서향 1실, 동향 1실) |
| 2 |  |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세탁건조실 창고 외향실 옥상다목적 테라스 피난계단2 |
| 일조분석 - 동지 |  | 10AM Daylight shading |
| |  | 4PM Daylight shading |

3)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설계지침에 따르면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로서, 거실창이 면한 발코니 외벽면의 폭과 높이의 중앙지점에 측정점을 지정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속일조가 확보되는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2009. 10

2.2.2 B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단독주택이 동일 대지 내에 있는 9인 이하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는 최대 규모이나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소규모 가정요양원 형태로 1층으로 된 단층 시설이다. 프로그램실을 중심에 배치하고 1인실이 서향, 2인실이 동향, 3인실이 북측면에서 창문이 동향과 서향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가 된 이유는 시설원장실과 주방/식당을 기존 단독주택과의 동선 연계가 용이하도록 한 결과이다. 기타 직원 공간으로 사무실, 목욕실, 면회실, 욕실, 특별침실, 보일러실이 지원시설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각각의 화장실과 목욕실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노인뿐만 아니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불편한 사례가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당창면적비는 3인실에서 과다하여 북측창으로부터 냉교현상이 심화되어 에너지다소비건축 및 재질사 온열 쾌적도가 저하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방풍실 좌측에 선데크를 만들어 프로그램실과 외부 마당 사이 전이공간 기능을 하면서 동절기 아침 햇살을 모아둘 수 있는 발코니는 효과적이었다. 1인당실면적은 1인실이 10.80m²/인, 2인실이 20.52m²/인, 3인실이 21.42m²/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² 이상에 충족된다. 침실창면적은 1인실이 20.83%, 2인실이 17.54%, 3인실이 33.61%로 다소 과도한 창면적으로 단열에 취약한 실내환경이다. 이에 일조환경도 남향이 아닌 동서향으로 동지 2시간 연속 일조가 매우 어려운 각도로 분석되었다.

Table 8.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B-Facility

| 층 | 도면 | 특징/비고 |
|-----------|--------|--|
| 1 | | 1인실 1개 2인실 1개 3인실 2개 프로그램실 목욕실 주방/식당 원장실 특별침실 방풍실/테크 보일러실 |
| | 침실수 | 4개실:1인실 1개, 2인실 1개, 3인실 2개 총 9인 |
| | 침실면적 | 1인실:10.80m ² 2인실:20.52m ² 3인실:21.42m ² |
| | 1인당실면적 | 1인실:10.80m ² /인 2인실:6.84m ² /인 3인실:7.14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1인실:20.83% 2인실:17.54% 3인실:33.61% |
| | 남향침실비 | 0%(동향2실, 북서향1실) |
| 일조분석 - 동지 | |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

2.2.3 C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구도심 준주거지역의 가로변에 면하여 위치한 본 시설은 2층으로 14인 입소정원의 중규모에 속한다. 1층은 노인의 체력단련실을 중심 홀로 주위에 2인실 4개소와 3인실 2개소를 배치하였다. 화장실은 모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였으나 침실문은 안여닫이로 되어 있다.

이 밖에 프로그램실과 다용도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피난계단은 실내 꺾임계단 외에 외부 돌출계단을 설치하여 2개의 피난계단을 지원한다. 2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사무실과 자료실이 남향으로 배치되고 간호사실, 다용도실, 상담실, 덤웨이터에 의한 수직운송설비를 구비하여 종사자의 근무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전체 6개 침실 중 4개 침실이 2인 침실로 구성되어 입소 노인의 주야간 생활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한 사례이다. 1인당실면적은 2인실이 6.81m²/인, 3인실이 6.75m²/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² 이상에 충족된다. 침실창면적은 2인실이 16.52%, 3인실이 20.0%로 14.3% 기준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일조환경은 3인 침실이 남향으로 체력단련실 좌우에 배치되어 양호하나 북향으로 된 2인 침실 4개소는 동지 2시간 일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획되어 일조 환경은 2인실 4개소의 8명 노인에게는 부적합 사례이다.

Table 9.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C-Facility

| 층 | 도면 | 특징/비고 |
|-----------|--------|--|
| 1 | | 2인실 4개 3인실 2개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용도실1 세탁실 장애인 화장실 피난계단2 |
| | 침실수 | 6개실:2인실 4개, 3인실 2개 총 14인 |
| | 침실면적 | 2인실:13.62m ² 3인실:20.25m ² |
| | 1인당실면적 | 2인실:6.81m ² /인 3인실:6.75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2인실:16.52% 3인실:20.0% |
| | 남향침실비 | 33%(남향2실, 북향4실) |
| 2 | | 휴게실 사무실 간호사실 자료실 상담실 다용도실2 주방 덤웨이터 화장실1,2,3 피난계단2 |
| 일조분석 - 동지 | |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

2.2.4 D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수가 수려한 산촌전원지역에 입지한 본 요양시설은 지방 거주 노인 보다 서울과 수도권 노인의 입소 비율이 높아 동일 대지 내에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시 하루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 룸(방문자원룸)을 지원하여 호응도가 높은 시설이다. 중북도형으로서 프로그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2, 3, 4인실을 배치하고 우측에 주방 및 다용도실을 지원한다. 정남향으로 인해 북측 2인실 2개 및 3인실 1개는 동지 2시간 일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2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회의실, 간호사실, 자료실, 주방을 배치하였는데, 1층 옥상 테라스를 사방으로 확보하여 개방과 피난을 충족한 사례이다. 1인당실면적은 2인실이 6.81m²/인, 3인실이 7.98m²/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² 이상에 충족된다. 침실창면적은 2인실

이 10.90%, 3인실이 15.03%, 4인실이 18.99%로 기준 14.3%에 2인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환경은 3인 침실 1개소와 4인실은 정남향으로 되어 매우 양호하나 2인실과 3인실 1개소는 매우 부적합한 사례이다.

Table 10.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D-Facility

| 층 | 도면 | 특성/비고 |
|-----------|--------|---|
| 1 | | 2인 침실 3인 침실 4인 침실 프로그램실 현관 안내실 다용도실1 다용도실2 다용도실3 주방 피난계단2 |
| | 침실수 | 2인실 3개, 3인실 2개, 4인실 2개 |
| | 침실면적 | 2인실:13.62m ² 4인실:28.44m ² 3인실:23.94m ² |
| | 1인당침면적 | 2인실:6.81m ² 4인실:9.48m ² 3인실:7.98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2인실:10.90% 4인실:18.99% 3인실:15.03% |
| | 남향침실비 | 42.86%(남향3실, 북향4실) |
| 2 | | 휴게실 간호사실 회의실 치료실 주방 화장실 사위실 직원화장실 피난계단2 테라스 |
| 일조분석 - 동지 | |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

2.2.5 E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대학 역세권에 입지한 시설이다. 따라서 젊은 대학생과 노인간의 상호 접촉이 자연스럽게 증가되고 요양보호사 및 대학 자원봉사자의 인력 지원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설이다. 한편이 용벽으로 된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시설은 지하에 휴게실을 중심에 배치하고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영양보호사실, 다용도실, 주방, 세탁실, 자원봉사자실로 환기, 일조, 방음에서 특별한 설계기술과 유지기법이 건물 라이프사이클 내내 요구되는 시설이다. 1층은 현관과 사무실, 면회실이 현관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3인실 6개소가 중복도형으로 구성되었다. 4층은 기존 2개 원형을 제외한 1인실 1개와 3인실 3개가 휴게실을 중심 홀로 하여 배치되었다. 각실에는 전용 발코니가 분포하여 노인의 실내환경 답답함을 다소 낮아지게 한다. 4층이므로 승강기가 피난계단과 함께 구비되었다. 그러나 4층은 10인의 입소 노인이 1개 화장실을 사용하므로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1인당침면적은 1층의 3인실은 5.82m²/인으로 부족하고, 4층의 3인실은 6.99m²/인으로 충족되었다. 침실창면적은 1층 3인실이 10.75%로 14.3% 이상에 부족하고, 4층 1인실이 16.54%, 3인실이 21.44%로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환경은 원형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남동향

으로 배치되었으나 4층의 3인실 1개소의 경우 북측으로 동지 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1.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E-Facility

| 층 | 도면 | 특성/비고 |
|-----------|--------|--|
| 지하 1 | | 휴게실 영양보호사실 방치료실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다용도실 자원봉사실 세탁실 다용도실 계단/승강기 |
| 1 | | 3인 침실 현관 사무실 면회실 피난계단1 승강기 |
| | 침실수 | 3인실 6개 |
| | 침실면적 | 3인실:17.47 ~ 33.48m ² |
| | 1인당침면적 | 3인실:5.82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3인실:10.75% |
| | 남향침실비 | 83.33%(남향5실, 북향1실) |
| 4 | | 1인 침실 3인 침실 휴게실 승강기 홀 피난계단1 복도 전용발코니 |
| | 침실수 | 1인실 1개, 3인실 3개 |
| | 침실면적 | 1인실:13.60m ² 3인실:20.99m ² |
| | 1인당침면적 | 1인실:13.60m ² /인 3인실:6.99m ² /인 |
| | 실당창면적비 | 1인실:16.54% 3인실:21.44% |
| | 남향침실비 | 50%(남향2실, 북향1실, 북향1실) |
| 일조분석 - 동지 | |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

2.3 노인요양원의 공간구성과 건축환경 분석표

침실은 1인실 2개, 2인실 9개, 3인실 16개, 4인실 2개로 3인실이 55%로 아직까지 3인 다인실이 주요 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인 단위실로 지향, 사생활 유지 및 자신의 집(Home like System)과 같은 환경 구축에 대비하여 국내 4인 합숙실 기준을 총 침실의 30% 이하로 설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당 최소 창면적은 창대 높이를 낮게 하여 조망과 채광이 수월하게 하고 창면적을 적게 축소하는 대신 천정을 통한 강제급기 팬을 설치 환기를 지원하는 것이 저에너지와 재질차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2. Environments Analysis of Home for the Elderly

| 시설 | 침실 공간구성 | | | | 1인당최소 침면적m ² | 실당창면적비% | 남향 침실비% | 피난계단 | 환경/디자인 특성 |
|----|---------|----|-----|----|-------------------------|---------|---------|------|-----------|
| | 1인 | 2인 | 3인 | 4인 | | | | | |
| A | | 1 | 1 | | 5.33 | 14.07 | 0 | 2 | 5인 최소규모 |
| B | 1 | 1 | 2 | | 6.84 | 17.54 | 0 | 0 | 선테크 |
| C | | 4 | 2 | | 6.81 | 16.52 | 33 | 2 | 덤웨이터 |
| D | | 3 | 2 | 2 | 6.81 | 10.90 | 42.86 | 2 | 중복도 |
| E | 1 | | 9 | | 5.82 | 10.75 | 50 | 1 | 승강기 지하공간 |
| 비고 | 2개 | 9개 | 16개 | 2개 | 평균6.32 | 평균13.96 | 평균41.95 | | |

Table 13. Integrated Analysis of Space Program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Unit: m²

| 시설 | | Fa-A | Fa-B | Fa-C | Fa-D | Fa-E | |
|----------|--|---|---|--|---|--------------------------|--|
| 영역 | 1인실 | - | 10.80 X 1실 | - | - | 13.60 X 1실 | |
| | ①침실 | 2인실 | 11.52 X 1실 | 20.52 X 1실 | 13.62 X 1실 13.95 X 1실 16.50 X 1실 19.13 X 1실 | 13.62 X 2실 13.95 X 1실 | - |
| | | 3인실 | 15.99 X 1실 | 21.42 X 2실 | 20.25 X 2실 | 23.94 X 1실 24.75 X 1실 | 17.47 X 1실 20.50 X 2실 23.54 X 2실 28.14 X 3실 33.48 X 1실 |
| | 4인실 | - | - | - | 28.44 X 2실 | - | |
| | 동거용실 | - | - | - | - | - | |
| ②사무지원실 | 사무실(11.44) 회의실(13.65) | 사무실(11.88) 원장실(30.24) | 사무실(16.32) 자료실(11.55) 상담실(4.95) | 회의실(16.32) 자료실(8.91) 안내실(10.8) | 사무실(17.47) 면회실(14.28) 자원봉사자실(8.64) | | |
| ③식당및조리실 | 주방(10.89) | 주방/식당(14.13) | 주방(9.89) | 주방(20.25) 간이주방(14.28) | 주방(28.14) | | |
| ④케어지원실 | 오락실(22.79) | 프로그램실(46.08) 특별침실(8.91) | 프로그램실(6.30) 간호사실(16.32) 체력단련실(45.0) | 프로그램실(85.86) 간호사실(13.77) | 물리치료실(22.38) 간호사실(25.26) 영양보호사실(21.24) 모두 발코니포함 | | |
| ⑤휴게실 | 휴게실(15.52) | 면회실(8.10) | 휴게실(47.89) | 휴게실(51.0) | 휴게실(49.08) | | |
| ⑥위생실 | 세탁건조실(24.78) 1층장애인화장실(5.18) 1층화장실(5.94) 2층화장실(5.51) | 목욕실(9.72) 장애인화장실(6.93) 1실 화장실(4.86)1실 화장실(4.05)1실 | 세탁실(1.20) 다용도실-1(4.78) 다용도실-2(11.73) 장애인화장실(7.57)1실 장애인화장실(5.70)1실 장애인화장실(7.20)1실 화장실(4.56)1실 | 세탁실(7.2) 다용도실1(5.28) 다용도실2(6.0) 다용도실3(19.52) 장애인화장실(5.76) 5개 장애인화장실(4.56)1개 화장실(4.50)2개 | 세탁실(14.04) 지하1층 장애인화장실(4.32)2실 화장실(2.7) 1실 1층장애인화장실(4.37)4실 4층장애인화장실(6.2)1실 | | |
| ⑦보일러실 | 보일러실(11.60) 창고(7.8) 방풍실(2.93) | 보일러실(4.95) 방풍실(5.4) | 보일러실(6.75) 방풍실(6.0) | 방풍실(7.2) | 다용도실(26.79) 발코니포함 방풍실(7.56) | | |
| ⑧공용계실 | 1층 2층 | 1층 | 1층 2층 덤웨이터(2.19) | 1층 2층 | 지하1층 지상1층 지상4층 엘리베이터(4.84) | | |
| ⑨옥외 및 옥상 | 다목적 마당 옥상테라스 | 다목적 마당 | 빨래 건조장 장독대 | 2층 다목적 테라스 (휴게, 빨래 건조) | 휴게정자 산책마당 | | |
| 입소정원 | 5 | 9 | 14 | 20 | 28 | | |
| 입지특성 | 도시근교권역 | 농촌마을권역 | 도시중심권역 | 산촌전원권역 | 대학역세권권역 | | |
| 지역지구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준주거지역 | 계획관리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대지면적 | 829.0 | 1,131.0 | 541.0 | 1,285.0 | 758.25 | | |
| 건축면적 | 102.50 | 217.08 | 216.72 | 364.61 | 270.13 | | |
| 연면적 | 185.10 | 217.08 | 357.07 | 494.43 | 510.76 | | |
| 규모/층 | 2 | 1 | 2 | 2 | 지하1, 지상4 | | |
| 근무직원 | 4 | 5 | 9 | 11 | 15 | | |
| 1인당 대지면적 | 829/5=165.80 | 1,131/9=125.67 | 541/14=38.64 | 1,285/20=64.25 | 758.25/28=27.08 | | |
| 1인당 연면적 | 185.10/5=37.02 | 217.08/9=24.12 | 357.07/14=25.51 | 494.43/20=24.72 | 510.76/28=18.24 | | |
| 총침실수 | 2 | 5 | 6 | 7 | 10 | | |
| 외부마감 | 치장벽돌 | 외단열 | 외단열 | 외단열 | 치장벽돌 | | |
|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일반철골구조 | 일반철골구조 | 일반철골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
| 운영특성 |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병행하여 운영 | 단독주택이 함께 있는 가정형태 운영 | 중규모 프로그램 운영 | 중규모 프로그램 운영 | 다가구 원룸을 증개축하여 운영 | | |
| 남향실비율 | 0%:동향1실/서향1실 | 0%:동향2실/북서향1실 | 33%:남향2실/북향4실 | 42.86%:남향3실/ 북향4실 | 50%:남향2실/ 북서향1실/북향1실 | | |
| 침실장비율 | 최저14.07% 최고19.53% | 최저17.54% 최고33.61% | 최저16.52% 최고20.0% | 최저10.90% 최고18.99% | 최저10.75% 최고21.44% | | |
| 특성용도실 | 대형 세탁건조실 | 면회실 | 빨래 건조장 테라스 | 게스트 룸 | 자원봉사자실 | | |
| 건립연도 | 2008 | 2013 | 2010 | 2013 | 2011 | | |
| 건축형식 | 증축(별동신축) | 증축(별동신축) | 신축 | 신축 | 증축(용도변경) | | |
| 유형 | 주간보호센터병설형 | 가정요양형 | 중규모 도심형 | 중규모 전원형 | 중규모 리모델링형 | | |

3. 결론 및 제언

국내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최근 시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는바,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2008. 7) 이후에 건립된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건축환경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으로 건립되었는바, 주간보호센터 병설형, 가정요양형, 기존 도시 주거지역 내 중규모 도심형, 도시외곽 관리지역의 중규모 전원형, 대학 역세권 원룸 리모델링형 등 매우 다양한 입지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침실 크기는 1인당 평균 6.32m²로 조사되어 법정 기준 6.6m²에는 근소한 차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실 창 면적은 평균 13.96%로 노인복지법 시설기준의 1/7인 14.29%에 다소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특성상 환기와 일조의 조건 충족이 노인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남향의 경우 가능한 발코니와 접하여 크게 하도록 하고, 북향 및 동서향의 경우 침실창 면적을 크게 하기보다 맞통풍 원리를 적용하거나 동지 때 일조 시간의 최대화가 되도록 침실 창의 위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실의 배기 팬 설비를 노인 주거용 침실에도 각각 설치하여 환기를 목적으로 대형 창을 동절기 및 난방기에 열지 않도록 배려하는 '침실 강제배기 또는 급배기 설비' 기준의 추가가 필요하다.

셋째, 요양원 침실의 남향 비율은 41.95%로 비교적 높으나 일부 시설은 중복도 및 기존 시설과 동선연결로 인해 남향(남동향 및 남서향 포함)이 아닌 배치가 되었다. 향계획은 병원건축과 같이 남서향을 1차적으로 검토하여 동지 때 2시간 연속 일조가 가능하게 한다. 차선택으로 남향이나 남동향으로 하되 북향의 침실은 태양계획에 따라 하절기에만 아침 저녁 일시 일조가 이루어져 춘추동에는 일조가 거의 되지 않는 영구음영 발생으로 비위생적 환경에 처할 개연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이러한 향계획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물론 노인의 거주환경 쾌적성과 보건치료 및 종사자 친환경성을 종합 고려하는 절대적 계획요소로 요양시설 설비기준에 동지 기준 각 침실당 최소 2시간 연속 일조 항목이 추가되어 계획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3~4인 합숙용의 다인실 정책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 후 요양노인이 되어 입소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일본의 유니트형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및 스웨덴의 그룹홈과 같이 '1인 단위 침실'로 수요공급시장이 재편될 것이 확실하므로 적정 1인당 침실면적과 지원실 공간 자체가 재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능한 평생 아껴온 물건과 소품 가구는 입소 때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침실에 비치하는 것이 노인정서(老人情緒)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요양원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에서 가능한 붙박이장(built-in Furniture)을 지양하고 탈착식 및 이동식 수납장을 적용하고 부분적으

로 노인의 입소 전 소품이나 가구의 지속가능한 침실 인테리어 활용이 적극 검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도출된 실무적 개선점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령화 장수로 인한 개인 성향 노인의 증가로 향후 1인실 및 2인실의 증가가 요구되는바, 신축 프로그램에서는 요양원 침실 중 '일정 비율 1인실 의무화 규정'이 필요하고, 1, 2, 3등급의 침실 분리 이용에 의해 입소(入所) 보다 입주(入住) 차원의 사생활 존중 시설이 필요하다.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등급 판정위에서 1등급의 노인은 돌봄(Care) 보다 치료(Cure)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전문요양시설이 지원되어야 한다. 즉 하루 종일 와상(臥床) 상태의 중증 치매 및 중풍 질환 노인은 1등급 전용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바, 시설의 물적 인적 자원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시설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노인요양원 보다 광역 개념으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같이 권역요양원을 도입하여 1등급 치매 및 중풍 전문요양원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5인에서 9인까지의 최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과 케어 서비스 양면에서 열악한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최소 20~30인 정도의 적정 시설로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규모화는 농어촌 소규모화와 병행하되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건축시설 중 용도변경이 기대되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모형 개발도 동시에 요구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20~30%를 초과하는 노인인구 구조를 보이는 바, 다양한 형태의 노인요양원이 건립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건축적, 법률적 종합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장수(長壽)가 재앙(災殃)이 아닌 축복(祝福)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미술/언어/웃음/재활/수치료(hydrotherapy)/놀이/도구치료/목상/신앙프로그램을 구비한 미래지향적 치매전문요양원 및 노인 호스피스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건축유형 및 모형의 개발, 시범사업의 지속적 발전 수정 피드백이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박재간, 손화희,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학지사, 2008
2. 보건복지정책진흥원, 2015노인복지연감, 2014
3.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안내, 2014
4.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www.activebb.kr
5. 유성호, 전태범, 노인장기요양시설 이해와 사례, 학지사, 2013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 인프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2013 정책보고서

접수일자 : 2015. 1. 10
심사완료일자 : 2015. 2. 20
게재확정일자 : 2015. 2. 22